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환경보건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건협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3조제1항제2호**”를 “**법 제33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위탁한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제22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22조의3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삭 제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33조제1항제2호</u>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4. <u>법 제33조제2항제2호</u> ----- -----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 ----- ----- --.
<u><신 설></u>	<u>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u>
1. ~ 3. (생 략)	<u>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u>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u>제4항</u> 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u>5. -----</u> ----- <u>제5항</u> ----- ----- ----- --

5. ~ 7.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 3. (생략)

4.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
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5. ~ 7. (생략)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건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신설>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 6.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⑤ -----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
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
련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 ⑧ (생략)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u> <u>제33조제1항</u>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u>법</u> <u>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 <u>규정</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62